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| <b>산학협력 활동 지원 규정</b> | 문서번호 |     | 3-1-40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  |     | 2021. 02. 25.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일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 | 1/2 | 관리<br>부서      | 산학<br>협력처 |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산학협력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은 업무특성에 따라 지원부서를 둘 수 있으며, 연간 활동에 대한 결과물 확인은 산학협력처에서 주관한다.

**제3조(산학협력활동)** 대학의 산학협력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.

1.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  - ① 국내.외 산업체 협약 체결
  - ② 산업체 공동세미나
  - ③ 산학협력협의회 및 간담회
  - ④ 기타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
2. 산학협력 공동교육
  - ① 취업연계 산학협력 실습교육
  - ②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
  - ③ 교육콘텐츠 개발
  - ④ 기타 산업체와 연계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3. 산업체 대상 학술활동 지원
  - ① 산업체 학술대회 및 세미나 지원
  - ② 산업체 포럼 참여 지원
4. 지역사업체 협력체제 구축
  - ① 지역연계 협의회 및 간담회
  - ② 지역연계 교육활동 지원
5. 교원 산학협력 역량 강화 지원
  - ① 산업체 임상 연수 지원
  - ② 산업체 장기 임상 연수 지원(1학기 이상)
6. 교수 산학협력 활동 지원
  - ① 산업체 기술지원(특강, 자문 등)
  - ② 산업체 공동연구

**제4조(업무수행단계)** 산학협력 활동 업무 수행을 위해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활동계획 수립, 시행, 평가, 환류의 절차를 거쳐 운영하며, 해당 내용을 산학협력처에 공유한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| <b>산학협력 활동 지원 규정</b> | 문서번호 |     | 3-1-40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  |     | 2021. 02. 25.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일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 | 2/2 | 관리<br>부서      | 산학<br>협력처 |

제5조(위원회) 산학협력활동 계획 및 결과, 성과에 대한 심의 및 평가는 산학협력 위원회를 통해 운영한다.

제6조(기타) 기타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산학협력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